서울과학기술대학교 후생복지회 운영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학생지원과), 02-970-6054

제정 2009. 2. 23.

개정 2010. 8. 30.

전부개정 2012. 3. 1.

폐지 2020. 5. 21.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교내생활 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후생복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명칭) 서울과학기술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학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후생복지회를 두다.
- 제3조(사업의 범위) 이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은 매점, 자동판매기 등으로 하며, 사업의 범위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조정할 수 있다.

제2장 후생복지운영위원회

- 제4조(설치) 본교의 후생복지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후생복지운영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한다)를 둔다.
- 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2명으로 구성하다.
 -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, 위원은 취업복지과장과 교수 6명(대학 별 교수 1명), 일반직원 1명, 조교 1명, 학생 2명(대학 1명, 대학원 1

- 명)으로 구성한다.
- ③ 교수위원은 각 대학장의 추천을 받고, 기타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- 제6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교직원위원은 2년, 학생위원은 1년으로 하며,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새로 위촉하여야한다. 다만,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 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수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8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며, 정기회의는 매년 4월과 12월 중에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9조(간사) 위원회는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장학복 지팀장이 간사가 된다.
- 제10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- 1. 후생복지회 관계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
 - 2. 사업계획 승인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결정
 - 3. 예산과 결산 승인
 - 4. 잉여금의 처분
 - 5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제3장 후생복지사업부

- 제11조(기능) ① 후생복지회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위탁운영관리 업체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위원장 산하에 후생복지사업부(이하 "사업부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사업부는 별표 1과 같이 구성하고, 부장은 취업복지과장이 되고 사업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팀장과 팀원을 둔다.

- 제12조(직원) ① 후생복지회 정원은 별표 2와 같이 정한다.
 - ② 부장은 본 사업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정한 범위에서 후생복지회에 근로장학생을 채용할 수 있다.
- 제13조(사무분장) 위원장은 후생복지회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직원의 사무분장 등 직원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4장 재정

제14조(재정) 본 회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기성회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다.

부칙(제28호, 2012. 3. 1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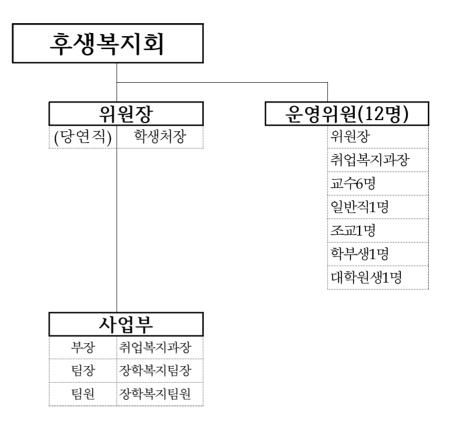
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536호, 2020. 5. 21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폐지한다.

(별표 1)

기구표



(별표 2)

정원표

(2012. 3. 1 현재)

직 위	교 수	일 반 직	가능및가성화직	계
위원장	1(겸임)			1명
부 장		1(겸임)		1명
팀 장		1(겸임)		1명
팀 원		1(겸임)	1(겸임)	2명
계	1명	3명	1명	5명